



조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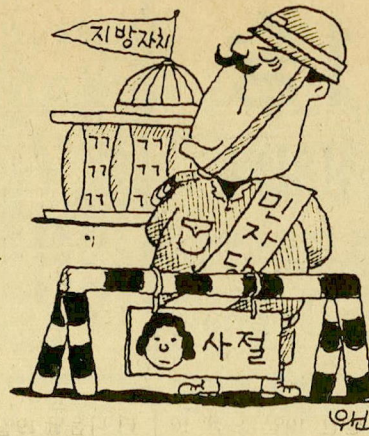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정치참여에 대한 꿈이 부풀어오른 여성계의 열망이 민자당의 정당추천제 배제 결정으로 좌절을 겪게 되었다.

지난 16일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지방의회선거의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당추천제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방자치법의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이 제도가 언제 실현될지 막연하다.

'여소아대' 체제가 올해 시작하기로 합의한 지방의회선거를 겨냥해 지난해부터 정무제2장관실,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문화연구소, YWCA 등 여성계는 각기 세미나와 성명서를 통해 여성진출방안으로 비례대표제나 할당제를 실시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평민당도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추천제를 바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밖에 김현자 전 국회의원, 백영옥·하영애씨를 비롯한 여성정치학자 등이 비례대표제, 당선할당제, 공천할당제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의석의 10~20%를 여성에게 특별히 배분하도록 하는 비슷한 취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여성의 참여욕구는 지자체라는 것이 교육·의료·탁아·노인복지·지역사회의 환경문제 등 주로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에 치중하는 만큼 여성의 전문성을 살리고, 소외되어온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며, 사회전반의 성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정치적 훈련의 기회나 자금과 조직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하므로 남성과의 경쟁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할당제나 비례대표제와 같은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거의 공통된 주장이다. 여성이 절감하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여성의 정치참여와 '합리적 차별'

이해하는 남성을 제외하고 대다수 남성, 특히 입후보를 염두에 둔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이견이나 할당제 반대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서 일부 정치인들의 '위헌론'을 들 수 있다. 특정의 성에 당선이나 공천 할당제를 적용할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며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이것은 헌법 제11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1항)와 "사회적 특수계층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 대한 논의에 앞서 '평등'이라는 개념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윤후정·신인령 두 교수는 <범여성학

-평등권과 여성>(1989)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평등이란 법상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법적 평등이란 수학적·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 원칙이란 사실이 동등할 때에만 타당하므로 사실상 동등한 것은 법적으로도 동등하게, 사실상 동등하지 아니한 것은 법적으로도 동등하지 않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사실에 따라 취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인인과 어린이는 정신적·신체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무시하여 법의 세계에서 전혀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오히려 불평등을 강제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처우받되 정당

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설' 즉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불평등 취급의 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우선적 가치로 하는 조치들로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조항, 미국의 소수집단과 여성에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이 남성을 차별받게 한다고 하여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나 대만의 여성당선 보장제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할당제 등은 '합리적 차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특히 위헌론의 주요 쟁점은 고용상의 특혜와 피선거권의 특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활동에서 여성의 불이익은 고용상의 불이익과 그 내용에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자 수의 배분을 규정하는 선거법이란 정치세력간의 협상으로 정해지는 만큼 '평등' 개념에 대한 철학적 인식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이런 '합리적 차별'은 여성이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유권자들이 여성후보나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에 충분한 기간에만 국한시켜야 될 것이다.

'합리적 차별'의 타당성은 비단 여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정치분야가 아니라도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등 불이익집단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논설위원>